

#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8
----------	------

제출연월일 : 2002 . .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17일자로 승인된 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하려는것임.

## □ 주요골자

- 가.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세 부과·징수관련 사무, 담배소매인 지정,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관련 업무, 체육시설업중 신고시설업에 관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 나. 대부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관련 업무를 삭제함(안 별표).

## □ 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5조
- 사무관리규정 제1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기획 12200 - 11766(2002. 8. 20)호 공문

#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또는 동”을 “구·동 기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출장소 및 동”을 “구·동 기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대부동 일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위임조례 제1조중 “동장·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을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하고, 제2조 본문중 “동장”을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하며, 동조의 단서중 “시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동장”을 각각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한다.  
②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제8조제1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시장에게”앞에 “구청장을 경유하여”를 삽입한다.

③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④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안산시공수의조례 제2조 및 제6조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⑥안산시수입증지조례 제8조중 “시장에게”를 “시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동은 동장에게”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중 “시장”을 “시장·구청장·동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안산시장”을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이 범 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구청추진상황실장 박 미 라
	담당자 성명·전화	허 진 (행정356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시가 광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대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또는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p> <p>구·동 기타 소속행정기관—————</p> <p>—————</p> <p>—————</p>
<p>제2조 (위임사항) 시 사무중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 (위임사항) ————— 구·동 기타 소속 행정기관—————</p>

&lt;별표&gt;

## 위임사무(제2조관련)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관
주민자치과	1.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자원봉사자 운영 2.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구청장
세 정 과	1.시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납세의 고지 2.부과취소 및 변경 3.납기전 징수 4.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5.물납, 분납 6.가산금 및 독촉 7.체납처분 8.결손처분 9.교부청구 10.관허사업의 제한 11.시세징수유예 등(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12.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 계산)	• 지방세법 제25조 • 동법시행령 제8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25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지방세법 제26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26조의2 • 동법시행령 제11조 • 시세조례 제7조  • 지방세법 제26조의3, 제26조의4 •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28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30조의3 • 동법시행령 제14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34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41조 내지 제44조 • 시세조례 제6조  • 지방세법 제45조내지 47조 • 시세조례 제6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세 정 과		13. 시세의 소멸시효 14. 서류의 송달 15. 공시송달 16. 징수촉탁 17. 공 탁 18.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 19. 시세납세증명서 발급 20.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30조의5, 제30조의6</li> <li>동법시행령 제14조의3</li> <li>시세조례 제6조</li> <li>지방세법 제51조, 제51조의2</li> <li>동법시행령 제39조의2</li> <li>시세조례 제12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52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23조</li> <li>시세조례 제13조</li> <li>지방세법 제56조</li> <li>동법시행령 제44조</li> <li>시세조례 제6조</li> <li>지방세법 제62조</li> <li>시세조례 제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64조</li> <li>동법시행령 제4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38조</li> <li>동법시행령 제19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1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li> </ul>	구청장
	2. 수입증지판매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계약체결 및 관리	· 안산시수입증지조례	
지역경제과	1. 담배소매인지정 2.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에 관한 권한 3. 허위구인 광고	1. 담배소매인지정 2.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 3.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수리 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1. 국내 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신고 2. 국내 무·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3. 국내 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1. 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사업법 제16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7조</li> <li>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사업법 제22조의2</li> <li>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3항</li> <li>담배사업법 제1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안정법 제19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25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2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46조 내지 제5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안정법 제34조</li> </ul>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농어촌 진흥과	1.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처분의 의무통보 및 부과  2. 농지처분 명령 및 매수청구  3. 유 휴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 농지임대차 관리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19조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제22조	구 청 장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1. 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2. 농지원부 교부 및 열람  3.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1조  • 농지법 제52조  • 농지법 제52조 • 동법시행규칙 제54조	
	3.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1. 영업신고  2.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3.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 축산물가공처리업 제24조  • 축산물가공처리업 제26조  • 축산물가공처리업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51조	
	4.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시 공수의 조례	
사회여성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2.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복지대상자시설 입소 의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	
	3.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4. 아동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신고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시행 규칙 제6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사회여성과		2.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폐지 및 휴지 3.민간·가정보육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 신고수리 4.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5.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  <u>6.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제11조</li> <li>• 동법시행규칙제21조</li> <li>• 동법시행규칙제6조2항</li> <li>• 동법 제24조</li> <li>• 동법시행규칙제27조</li> <li>•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li> <li>• 동법 제29조</li> <li>• 아동복지법제10조</li> <li>• 동법시행령제5조 내지 제10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li> </ul>	구청장
문화체육과	1.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청소년게임장업 신고 2.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신고 3.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4.복합유통·제공업의신고 및 등록 5.신고증·등록증의 교부 6.신고증·등록증의 제교부 7.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8.등록취소 등 9.과징금 부과 10.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6조제2항, 제4항</li> <li>• 동법 제26조제3항, 제4항</li> <li>• 동법 제27조</li> <li>• 동법 제28조</li> <li>• 동법 제30조</li> <li>• 동법시행령 제11조</li> <li>• 동법 제31조</li> <li>• 동법 제39조</li> <li>• 동법 제40조</li> <li>• 동법 제41조</li> </ul>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문화체육과		11.폐쇄 및 수거 12.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42조 • 동법 제53조	구 청장
2.체육시설업종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2.체육시설업등의 승계신고 3.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4.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5.보고 6.수수료 납부 7.벌칙및양벌규정에의한 조치 8.과태료 처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2조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5조제2항 • 동법 제36조 • 동법 제40조 • 동법 제41조 • 동법 제42조,제43조 • 동법 제44조	
3.주구운동장관리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 승인(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환경위생과	1.공중위생영업,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1.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통보 2.공중위생업자 현황관리 3.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 4.보고 및 출입 검사 5.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6.폐쇄등 청문 7.위생관리등급 공포 8.위생교육 9.위생업소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제5조 • 공중위생관리법제9조 •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 •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 제23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환경위생과	2.위생용품의 관리  3.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다음의권한  4.식품위생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신고 변경신고  1.유통주점,단란주점 영업 허가 및 변경허가 2..유통주점,단란주점 영업 폐업 신고 3.유통주점,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1. 출입,검사,수거등 2.영업허가등의 제한 3.위생교육 4.품질관리 및 보고 5.식품등의 자진회수 6.위생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위생법제14조의2</li> <li>식품위생법제22조</li> <li>식품위생법제22조</li> <li>식품위생법제25조</li> <li>식품위생법제17조</li> <li>동법시행규칙제12조,제13조</li> <li>식품위생법제24조</li> <li>식품위생법제27조</li> <li>동법시행규칙제36조</li> <li>식품위생법제29조</li> <li>동법시행규칙제41조</li> <li>식품위생법제31조의2</li> <li>식품위생법제32조</li> <li>동법시행규칙제43조</li> </ul>	구청장
공원녹지과	1.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 공원)의 관리  2.완충녹지 관리  3.가로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감독  2.도시공원점용허가 및점용료의 정수  3.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정수  1.녹지의 관리 2.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정수  1.가로수 유지관리 2.가로수 훠손금 정수 3.가로수 보식 4.가로수 이식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 및 제 20조, 제 21조</li> <li>동법 제8조 및 제15조</li> <li>안산시도시공원조례제14조</li> <li>동법 제 14조</li> <li>동법시행령 제11조</li> <li>안산시도시공원조례 제14조 및 제15조</li> <li>도시공원법 제11조1항</li> <li>도시공원법 제12조2항</li> <li>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 허가에대한조례 제6조</li> <li>도로법 제3조</li> <li>도로법 제83조</li> <li>도로교통법제108조</li> </ul>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공원녹지과	4.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1.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산림법 제90조	구청장
도시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 및 발급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건설과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86조의2 · 동법시행령 제37조의3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2. 노점상 관리 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점상 지도단속	· 도로법 제40조, 제47조	
	3.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상적치물 단속	· 도로법 제40조, 제47조 · 동법시행령 제29조의5, 6 ·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4. 도로점용(굴착)허가	1. 도로점용(굴착)허가 2. 도로굴착 교통 협의	· 도로법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65조	
	5. 공동구 시설관리	1. 공동구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	
	6. 노점상생업자금융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융자금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2. 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	·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건축과	1.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행정조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시행 2.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3. 불법건축물 행정조치(행정 대집행 · 계고 · 고발 · 이행 강제금 부과 등)	· 건축법 제68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 건축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69조 · 건축법 제78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83조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립간판,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단, 2개구 이상에 표시 하는 광고물 제외)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 동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3.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4.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5.허가,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정수  6.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7.행정대집행의 특례  8.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  9.과태료의 부과징수  10.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제3조</li> <li>• 동법시행령 제9조</li> <li>• 동법 제9조</li> <li>• 동법시행령 제39조</li> <li>• 동법 제17조</li> <li>• 동법 제10조</li> <li>• 동법 제10조의2</li> <li>•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li> <li>• 동법 제13조</li> <li>• 동법 제20조</li> <li>• 동법시행령 제46조</li> <li>• 동법 제20조의2</li> <li>• 동법시행령 제47조</li> </ul>	구청장
허가과	1.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14조</li> </ul>	
	2.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29조</li> <li>• 동법시행령 제25조</li> </ul>	
교통행정과	1.공영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노외주차장의설치 통보 처리  2.공영주차장(노외·노상· 임시)관리 및 유지보수 ※유료주차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4조1항</li> <li>• 동법시행령 제17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7조</li> <li>•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li> </ul>	
	2.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권한	1.주정차위반 단속 및 이의 신청  2.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관리,감액처리 및 압류해제  3.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li> <li>•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li> <li>•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li> <li>• 동법시행령 제10조의2,3</li> </ul>	
	3.무단방치차량	1.시가지 방치차량 관리 및 폐차처리  2.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 제26조</li> <li>• 동법시행령 제6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24조</li> <li>•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5조 내지 제88조</li> </ul>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 기관
세정과	1.납세(세목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납세(장수유예,미과세) 증명서발급	· 지방세법 제3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대부출장소장 동 장
	2.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 징수  2.지방세고지서교부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77조  · 지방세법 제25조 및 제51조 제51조의 2	대부출장소장
농어촌 진흥과	1.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권한	1.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대부출장소장
	2.농지원부의 작성 비자에 관한 다음의권한	1.농지원부작성 비자 및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 농지법 제51조 및 제52조 ·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사회여성과	1.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대부출장소장 동 장
문화체육과	1.주구운동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 안산시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대부출장소장
환경위생과	1.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매장 · 화장 및 개장신고  2.공설매장 ·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매 · 화장 납골 증명  3.공설묘지의 사용허가  4.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제5조  ·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대부출장소장 동 장
	2.공중화장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1.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대부출장소장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1.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중 다음의 권한	1. 불법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건축법 제69조 제1항	대부출장소장
	2. 건축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p>1. 건축신고의 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sup>2</sup> 이내의 중축, 개축 또는 재축</li> <li>· 대수선</li> <li>·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sup>2</sup> 이하인 것</li> <li>· 연면적의 합계가 100m<sup>2</sup> 이하인 건축물</li> <li>· 건축물 높이를 3m이하 범위 안에서 중축하는 건축물</li> <li>·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 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산업촉진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m<sup>2</sup> 이하인 공장</li> </ul> <p>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사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li> </ul>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li>·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li>·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li> <li>·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li>   <li>· 시장이 도로변등의 마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정·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li> <li>·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m'이하인것</li> <li>·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3m'이하인것</li>   <li>·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창고 또는 숙소</li> <li>· 도시 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 이상인 것</li> <li>· 연면적이 100m'이상인 간이 축사용·기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의 건축물</li> <li>· 농업용 고정식온실</li>   <li>· 유원지·종합휴양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li> <li>· 동법시행령 제117조</li> </ul>	대부출장소장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li>   <li>3.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6m를 넘는 굴뚝</li>   <li>·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ul> </li>   <li>·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li>·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li>·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li>   <li>·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li>   <li>·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li>·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li>   <li>· 제조시설 ·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쌔이로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li> </ul> </li>   <li>·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li> </ul>	대부출장소장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전축과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의 취소 5.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9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대부출장소장
청소과	1. 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쓰레기 적환장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58
------------	------

제안년월일 : 2002. 9. 13.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시에서 구·동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중 대부 출장소에 위임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옥외광고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상급 기관인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안 별표 중 대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건축과 소관 업무 중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중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옥외 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제2조 관련)의 건축과에서 대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건축과 위임 사무중 위임사무명단의 “1.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중 다음의 권한”과 단위사무명단 중 “1.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근거법령란 중 “건축법 제69조 제1항”을 각각 삭제하고,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중 단위사무명단의 “3.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근거법령란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건축과 위임사무명단 중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각각하고, 건축과 단위사무명단 중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각각 한다.